공고 제 2023-164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공 고

제 2023-1619호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 27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09호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필요시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3조)

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사항 규정(안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895, 이메일: jgm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청년과(☎02-2627-2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26호

서울특별시 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구금고 보관·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 처리와 운영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구 명을 포함하도록 제명 수정(제명)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재정비(안 제2조)

다.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5항 신설)

라. 상품권 운영자금의 이자수익 등 처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상품권 할인판매율 예외 규정 단서 신설(안 제6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02-2627-1316, FAX 02-2251-1675, 이메일 song_zzoan@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2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2023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기구배치와 인력운영으로 신규행정 수요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직렬을 조정하는 등 변화요인을 정원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총계 : 1,204 → 1,208【증4】 ※ 의회사무기구 변동없음

1) 구 본 청 소계 : 825 → 830【증5】

2) 직속기관 소계 : 97 → 98【증1】

3) 동 소계 : 250 → 248【감2】

나. 직급·직렬별 정원

1) 일반직(계) : 1,197 → 1,201【증4】

- 5급 소계 : 53 → 54【증1】

▸ 의무 또는 약무 : 5 → 6 (직속기관 증1)

- 6급 소계 : 233 → 233【변동없음】

▸ 시　　설 : 27 → 26 (구본청 감1)

▸ 행정,보건,공업 또는 환경 : 3 → 4 (구본청 증1)

- 7급 소계 : 364 → 367【증3】

▸ 행　　정 : 177 → 178 (구본청 증1)

▸ 사회복지 : 42 → 43 (구본청 증1)

▸ 환　　경 : 2 → 3 (구본청 증1)

▸ 시　　설 : 43 → 44 (구본청 증1)

▸ 전기운영 : 2 → 1 (구본청 감1)

- 8급 소계 : 352 → 353【증1】

▸ 환　　경 : 1 → 2 (구본청 증1)

- 9급 소계 : 184 → 183【감1】

▸ 사회복지 : 44 → 42 (동 감2)

▸ 방재안전 : 0 → 1 (구본청 증1)

▸ 전기운영 : 2 → 0 (구본청 감2)

▸ 사무운영 : 7 → 6 (구본청 감1)

▸ 전기시설 : 0 → 2 (구본청 증2)

▸ 기계시설 : 0 → 1 (구본청 증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02-2627-1316, FAX 02-2251-1675, 이메일 song_zzoan@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3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독산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사인력 보강 및 2050 탄소중립의 전방위적 실천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204명에서 1,208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172명 → 1,176명 (증4)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총 계: 1,204명 → 1,208명 (증 4)
- 일 반 직 계: 1,197명 → 1,201명 (증 4)
- 일반 5급 계: 53명 → 54명 (증 1)
- 6급 이하 계: 1,133명 → 1,136명 (증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 02-2627-1012, FAX 2251-1770, E-mail : salim@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3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관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입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을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개선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에 보행시설물(계단, 다리 등) 추가(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중 “실외 운동시설”을 “공동주택 단지 내 운동시설”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다.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중 “옥외주차장”을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자목)

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 대상 사업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너목부터 머목 신설)

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별균형 고려(안 제9조제3항)

바. 준용 규정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14조)

사. 지원대상 사업 정비 및 추가에 따른 지원비율, 평가항목, 평가 기준 변경(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710, 이메일: jmalolhm@geumchoe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2-2627-16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3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고용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중장년층” 삭제(안 제2조)

나. 대상 기업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변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895, 이메일: ljy1226@geumchoe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청년과(☎02-2627-2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3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 ·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금천구민의 직장운동경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포터즈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8조)

마.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ji7542@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3) 팩스 : 02-2251-165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3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진행과 평가위원의 위촉 기준을 변경하고, 평가위원의 회피 등을 명확히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기준 변경(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제2조 제1항제5호 삭제)

나. 서면심사의 근거 기준 신설(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성별균형 고려(안 제3조제2항)

라. 예비 평가위원 구성 인원 기준 변경(안 제3조제3항)

마. 제안서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바. 제안서평가위원회 성원 변경(안 제5조제1항)

사.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 02-2627-1207, FAX 2251-1680, E-mail : 1539@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3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3. 3. 28. 개정, 2023. 9. 29. 시행)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지원방법 및 내용(안 제5조)

마. 업무의 대행(안 제6조)

바. 점검 및 비용환수(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peach12@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7층 복지지원과 담당자

3) 팩스 : 02-2251-18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02-2627-1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4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소음 · 진동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나. 구의회 보고 관련 규정 변경(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g0406@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도로과

3) 팩스 : 02-2251-17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로과(02-2627-1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4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및 지원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추가(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다. 경로당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추가(안 제8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라.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8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어르신장애인과장, ☎ 02-2627-1394, FAX 2251-1645, E-mail : grutergi@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4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및 제6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710, 이메일: bg2178@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2-2627-2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19호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우리 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3. 10. 06.(금) ~ 2023. 11. 07.(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 2627-1808)
3. **의견제출** : 공람장소(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에 공람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금천구 시흥4동 810번지 일대	-	증) 65,899.6	65,899.6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계		65,899.6	100.0	
획지	소계	55,915.5	84.8	
	공동주택용지	53,931.4	8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종교용지 1	680.0	1.0	
	종교용지 2	1,304.1	2.0	
정비기반시설	소계	9,984.1	15.2	
	도로	3,853.4	5.8	
	공원	4,053.0	6.2	
	공공청사	2,077.7	3.2	

라.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5,899.6	-	65,899.6	10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8,147.0	감)15,330.0	2,817.0	4.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9,446.6	감)14,116.6	15,330.0	23.3	
	제2종일반주거지역	18,306.0	증)29,446.6	47,752.6	72.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금천구 시흥4동 809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5,330.0	•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금천구 시흥4동 815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446.6	•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마.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일반	460	시흥동 808-15	시흥동 798-64	금천구고시 제2008-6호 '08.2.28	
변경	소로	1	(-)	10~12	국지도로	일반	460	시흥동 808-15	시흥동 798-64	금천구고시 제2008-6호 '08.2.28	
기정	소로	1	111	10	국지도로	일반	572	시흥동 1000-87	시흥동 57	금천구고시 제2001-4호 '01.3.5	
변경	소로	1	111	10~12	국지도로	일반	572	시흥동 1000-87	시흥동 57	금천구고시 제2001-4호 '01.3.5	
신설	소로	1	a	14	국지도로	일반	140	시흥동 813	시흥동 806	-	
신설	소로	1	b	14	국지도로	일반	198	시흥동 814-23	시흥동 산126-23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	소로 1-(-)	소로 1-(-)	• 연장 : 460m • 폭원 : 10m~12m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 및 대상지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확폭	
변경	소로 1-(-)	소로 1-111	• 연장 : 572m • 폭원 : 10m~12m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 및 대상지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확폭	
신설	-	소로 1-(a)	• 연장 : 140m • 폭원 : 14m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신설	-	소로 1-(b)	• 연장 : 198m • 폭원 : 14m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공원	소공원	시흥동 806-16번지 일대	-	증)2,753.0	2,753.0	-	
신설	공원	문화공원	시흥동 808-22번지 일대	-	증)1,300.0	1,300.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설	공원	시흥동 806-16번지 일대	• 소공원 신설 - 면적 : 2,753.0㎡	• 대상지 내 주민 휴식·휴게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신설	공원	시흥동 808-22번지 일대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1,300.0㎡	• 대상지 내 주민 휴식·휴게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3) 공공청사 중복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민센터	공공청사	시흥동 812-38번지 일대	1,253.9	감) 1,253.9	-	금천구고시 제2005-4호 '04.12.20	
신설	주차장	주차장	시흥동 813-20번지 일대	-	증) 2,077.7	2,077.7	-	
	주민센터	공공청사					-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폐지	주민센터	공공청사	시흥동 812-38번지 일대	• 공공청사 폐지 - 면적 : 1,253.9㎡	●접근성 향상 및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이전 조성을 위하여 공공청사 폐지	
신설	주민센터	-	시흥동 813-20번지 일대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2,077.7㎡	•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이전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신설(중복결정)	
	체육시설					
	주차장					

4) 공영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주차장	시흥동 812-4	763.2	감) 763.2	-		

- 공영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폐지	-	●공영주차장 폐지	●공공청사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대상지 내 공영주차장 폐지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정기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1000세대이상 ~ 1,500세대 미만	375㎡ 이상	450.00	
	어린이집	1,000세대이상 ~ 1,500세대 미만	580.00 이상	600.00	
	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	200.00	
	작은도서관	1,000세대이상 ~ 1,500세대 미만	203.00 이상	243.60	
	주민공동시설	-	-	700.00	
	어린이놀이터	1,000세대 미만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1,319.00 이상	1,450.90	
	주민운동시설	-	-	1,003.13	
	소 계	500㎡ + 총세대수 × 2.0㎡ × 1.25	3,425.00이상	4,647.63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10㎡ + (총세대수 - 50) × 0.05㎡	66.00 이상	330.00	
	경비실	-	-	50.00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65,899.6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303	-	-	303	-	

아. 건축물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 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최고 높이</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 (㎡)</th><th>명칭</th><th>면적 (㎡)</th><th>정비 계획</th><th>예정 법적 상한</th></tr>
<tr><td rowspan="5">신설</td><td rowspan="5">시흥4동 810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td><td rowspan="5">65,899.6</td><td rowspan="2">획지 I</td><td rowspan="2">53,931.4</td><td rowspan="2">시흥동 810번지 일대</td><td rowspan="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30이하</td><td>174.60 이하</td><td>195.00 이하</td><td rowspan="2">최고35층 이하 (110m)</td><td>제2종 (7층)</td></tr>
<tr><td>30이하</td><td>207.97 이하</td><td>235.00 이하</td><td>제2종</td></tr>
<tr><td>획지2</td><td>2,077.7</td><td>시흥동 813-20번지 일대</td><td>주민센터, 체육시설</td><td colspan="3">관련법규에 따름</td><td></td></tr>
<tr><td>획지3</td><td>1,304.1</td><td>시흥동 813번지 일대</td><td rowspan="2">종교시설</td><td colspan="3" rowspan="2">관련법규에 따름</td><td rowspan="2"></td></tr>
<tr><td>획지4</td><td>680.0</td><td>시흥동 814-23번지 일대</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 주택공급계획(1,170세대)
<table><tr><th colspan="4">구 분</th><th>세대수(세대)</th><th>비 율(%)</th><th>비 고</th></tr><tr><td colspan="4">계</td><td>1,170</td><td>100.00</td><td></td></tr><tr><td rowspan="10">공동주택</td><td rowspan="5">공공(임대)</td><td colspan="2">소 계</td><td>233</td><td>19.91</td><td></td></tr><tr><td rowspan="2">60㎡ 이하</td><td>39㎡형</td><td>82</td><td>7.01</td><td></td></tr><tr><td>59㎡형</td><td>61</td><td>5.21</td><td></td></tr><tr><td rowspan="2">60㎡~85㎡ 이하</td><td>74㎡형</td><td>34</td><td>2.90</td><td></td></tr><tr><td>84㎡형</td><td>56</td><td>4.79</td><td></td></tr><tr><td rowspan="5">분양</td><td colspan="2">소 계</td><td>937</td><td>80.09</td><td></td></tr><tr><td rowspan="2">60㎡ 이하</td><td>39㎡형</td><td>65</td><td>5.56</td><td></td></tr><tr><td>59㎡형</td><td>199</td><td>17.01</td><td></td></tr><tr><td rowspan="2">60㎡~85㎡ 이하</td><td>74㎡형</td><td>47</td><td>4.02</td><td></td></tr><tr><td>84㎡형</td><td>517</td><td>44.19</td><td></td></tr><tr><td colspan="2">85㎡ 초과</td><td>99㎡형</td><td>109</td><td>9.31</td><td></td></tr></table></td></tr>
<tr><td colspan="3">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10">• 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정비계획용적률 :174.6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195.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용적률 : 207.97%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35.00%</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독산로(20m)변 건축한계선 6m
• 금하로23길(12m)변 건축한계선 3m
• 독산로36나길(12m)변 건축한계선 3m
• 독산로28길(14m)변 건축한계선 3m
• 독산로36길(14m)변 건축한계선 3m</td></tr>
<tr><td rowspan="2">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공지</td><td colspan="11">• 금하로23길(12m)과 독산로28길(14m)가 연결되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계획
• 독산로(20m)변 건축한계선 6m 이내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td></tr>
<tr><td>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11">• 독산로변(서측) ~ 금하로23길변(동측) : 폭원 12m 조성</td></tr>
</table>

■ 용적률 계획

■ 기준용적률 산정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용적률 산식을 적용하여 별도 용적률 산출함

구분		기준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

■ 허용용적률 산정

•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의 허용용적률 완화항목 및 적용

구 분	인센티브량	적용		비고
		제2종	제2종(7층)	
공공 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설정) ▫ 기준용적률x(조성면적/대지면적)xa	190%x (1,700㎡/39,855.4㎡)x1 = **8.1%**	150%x (600㎡/14,076.0㎡)x1 =**6.4%**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5%**	-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x[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xa	-	150%x (470㎡/14,076.0㎡)x1 = **5.0%**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	-	
지역기반 시설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 등) ▫ 기준용적률x(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xa ※a=1이하	-	-	
지역특화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	-	
대상지		**10% 적용**	**10% 적용**	

구분		허용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6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구 분	적용기준	완 화 내 용
개발가능 용적률	공공시설 부지제공시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a(토지)+0.7*a(건축물))≦ 250%이내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개발가능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6">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4">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td><td>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td><td>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colspan="2">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td></tr>
<tr><td>18,147.0㎡</td><td>14,076.0㎡</td><td>4,071.0㎡</td><td>945.6㎡</td><td colspan="2">2,071.4㎡</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6">•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4,071.0㎡ - 2,071.4㎡ - 945.6㎡= 1,054.0㎡</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6">=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a(건축물))
= 160% × {1 +(1.3 × 0.07488)}
= 174.60% 이하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4,071.0㎡ - 2,071.4㎡ - 945.6㎡) ÷ 14,076.0㎡
= 0.07488</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6">•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195.00%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 194.96% 적용</td></tr>
<tr><td rowspan="4">제2종일반주거지역</td><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2">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 colspan="3">건축물 기부채납</td></tr>
<tr><td>공공청사</td><td>공영
주차장</td><td>체육
시설</td></tr>
<tr><td>47,752.6㎡</td><td>39,855.4㎡</td><td>4,659.2㎡</td><td>799.4㎡</td><td>5,169.7㎡</td><td>2,936.66㎡</td><td>640.87㎡</td><td>1,125.17㎡</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7">•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공공청사(환산부지면적) + 공영주차장(환산부지면적) + 체육시설(환산부지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4,659.2 + 2,936.7㎡ + 640.9㎡ + 1,125.2㎡ - 799.4㎡ - 5,169.7㎡ = 3,392.9㎡</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7">=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a(건축물))
= 200% × {1 +(1.3 × -0.03287 + 0.7 × 0.11799)}
= 207.97% 이하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4,659.2㎡ - 799.4㎡ - 5,169.7㎡) / 39,855.4㎡
= -0.03287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2,936.7㎡ + 640.9㎡ + 1,125.17㎡) ÷ 39,855.4㎡ = 0.11799</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7">•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35.00%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 234.94% 적용</td></tr>
</table>

※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분	지점	개선방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방안 제시(3개소)	관할경찰서	관할경찰서	협의후
진출입 동선	-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비신호교차로 운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진출입구 적정 회전반경 확보(R = 6.0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사업지 서측도로(독산로36나길,독산로32길,금하로23길) set-back 및 보도 확보 B=10.0m→12.0m, L=340.0m, 보도폭원B=2.0m→B=2.5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독산로36길측 set-back 및 보도 확보 B=6.0m→14.0m, L=135.0m,보도폭원 B=2.0~3.0m,양방통행→2~3차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독산로28길측 set-back 및 보도 확보 B=8.0m→14.0m, L=195.0m, 보도폭원 B=2.0~4.5m, 양방통행→2~3차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보행 및 자전거	-	• 보행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 17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독산로32길 양측보도 확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차시설	-	• 법정주차대수 및 주차수요 - 법정주차 : 1,214대 - 주차수요 : 1,469대 - 계획주차 : 1,657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교통안전 및 기타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 유·출입부 경고등 설치 : 2개소 - 과속방지턱설치 : 8개소 - 보행자 방호울타리(L=590.0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 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유도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전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환경영향	• 대지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 등을 감안하여 계획국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한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대상지 내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대기환경	공사시	• 비산먼지 - 주 진입로 및 인근 도로 변의 주기적 살수(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진입로 변 물 흡수 부직포 설치 ※ 살수량 : 1회당 300~400cc/㎡(풍속 및 일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횟수 조정) - 토사운반차량의 토사적재 높이(적재함 상단에서 5cm 이하), 도로포장, 화학물처리, 토양안정 물질투여, 속도조절 등에 대한 관리 및 규제 - 2003년식 이상의 노후건설장비 사용제한하고, 공사차량의 운행시간대 조정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 석면처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 건축폐기물은 불침투성 자루에 밀봉하여 석면함유 스티커 부착 후 지정 장소에 보관하여 처리 - 천장재 석면 제거 작업 시 충분히 살수하고, 바닥시트는 습윤화하여 석면폐기물로서 처리 - 석면분진은 젖은 걸레 또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 후 처리	
	운영시	• 대기오염에 강한 수목식재 - 배기가스 및 환경정화 능력이 우수한 수목을 식재하여 주변경관 조화 및 대기질 정화효과 도모 ※ 도로변 :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개나리 등, 주택가 : 느티나무, 매화나무 등 • 대기오염 최적방지시설 설치(필요시) - 도시가스(LNG) 보일러 설치 시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저녹스버너(CO 70%, NOx 50% 이상 저감)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소음·진동		• 소음원 대책 -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공사 안내표지판 및 공사 실시간 소음현황판 설치 - 소음 및 진동이 우려되는 장비에 방진시설(고무패드, 진동방지스프링 등) 및 국소방음커버 설치 - 공사 투입인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불필요한 충격음 발생 억제 • 건설 공사자 소음관리요령(1993.11, 환경부) 준수 -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 이하) 및 경적 사용 금지 - 차량 이동로 선정 시 학교, 주택 밀집지역 등 소음·진동 피해 예상지역 배제 -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공회전, 장비의 급가동 및 과부하 금지 - 야간작업(18:00~06:00) 금지, 장비 조합 및 투입시기 조정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부지경계상에 가설방음판넬 설치하여 소음전달경로 차단 - 가설방음판넬의 높이는 최소 3m 이상으로 하고, 가설방음판넬의 길이는 대상구간 양 끝단에서 가설방음판넬 높이의 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 ※ 가설방음판넬만으로 저감이 어려울 경우 추가 저감방안 수립 - 가설방음판넬 설치 전,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관, 경관적 요소 및 주민통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치방안 강구	
일 조		• 본 사업에 따른 일조권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음	
교통안전		•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시) - 부지 경계선을 타워크레인이 벗어나지 않도록 배치하여 학생 보행통학로 안전 확보 • 안전시설 - 부지경계에 공사가림막을 설치하여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공사장비로부터 안전 확보 -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및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최대한 이용	

타.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파.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303	287	16	303	303	-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1,170	937	233	
60㎡ 이하	소 계	407	264	143	
	30㎡이하	-	-	-	
	30㎡초과~50㎡이하	147	65	82	
	50㎡초과~60㎡이하	260	199	61	
60㎡초과~85㎡이하		654	564	90	
85㎡ 초과	소 계	109	109	-	
	85㎡초과~135㎡이하	109	109	-	
	135㎡초과	-	-	-	

※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

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획지면적(㎡)	동 수	세대수 (전용85㎡이하)	세대규모(㎡) (전용/공급)	연면적	검토
시흥4동 810번지일대	53,931.4	MIX	82	39.95㎡/54.67㎡	19,393.81㎡	적합
			61	59.95㎡/81.47㎡		
			34	74.95㎡/102.24㎡		
			56	84.95㎡/115.46㎡		

5. 관련도서 : 생략(금천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획내용은 협의·심의 등 향후 절차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